

예산총칙

2024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58,058,614	13,741,758
일반회계	424,304,815	12,729,144
특별회계	33,753,799	1,012,614
기타특별회계	33,753,799	1,012,61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234,557	277,037
수질개선특별회계	8,930,856	267,92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78,875	11,366
농촌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	3,038,000	91,140
농공지구단지조성특별회계	210,000	6,300
하수도특별회계	11,961,511	358,845

제 2 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명세서"와 같다.

제 3 조 2024년도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6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600,000천원이고, 재난·재해예비비는 912,143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일반회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31,101,037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